

2016.04.09 국가직 9급 [세법개론] 2책형

아모르이그잼학원 세법 박창한

총평

올해의 9급 세무직 세법개론의 특징은 한마디로 시험장에서의 체감은 아주 어려웠지만 이에 반해 정답에 해당하는 문장들은, 2~3문제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법조문이 그대로 출제되었고 또한 평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 9급 세법개론의 특징은 세무조정문제와 계산문제가 예년의 7급 세무직 세법 시험보다 문항수도 많았고 난이도에서도 쉽지 않게 출제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법인세의 감가상각비한도초과액 추인문제와 대손충당금한도초과액 계산문제 그리고 상속세의 상속재산 추정문제는 계산문제를 연습한 수험생들에게는 그리 어렵지 않은 문제들이지만, 이를 연습해보지 않은 다수의 9급만을 준비한 수험생들에게는 낯설고 어렵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채점을 해보면 본인이 체감한 난이도보다는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받았으리라 생각됩니다. 합격선에 있는 수험생들의 올해 세법점수는 실제로 예년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높으리라 예상해봅니다.

여러분의 좋은 결과를 기원합니다.

문 1.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금액 중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은?

- ①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 ②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 ③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인 거주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
- ④ 선급비용(先給費用)

1. ③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필요경비불산입 항목에 해당한다.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제외한다.

문 2. 영리내국법인 (주)A는 제10기 사업연도(2015년 1월 1일 ~ 12월 31일) 7월 1일에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제품을 할부판매하였다. (주)A가 할부판매 거래에 대해 선택지와 같이 각각 회계처리했다고 가정할 경우 세무조정이 필요한 것은? (단, (주)A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회계처리의 기업회계기준 위배여부와 대응하는 매출원가는 고려하지 아니함)

- 총 할부매출채권 : 40백만 원
- 대금회수조건 : 매월 25일에 2백만 원씩 20개월간 회수
- 제10기 중 현금 회수액 : 14백만 원(2016년 1월분 선수금액이 포함되어 있음)
- 총 할부매출채권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현재가치 : 36백만 원

① (차)	장기매출채권	40백만 원	(대)	매	출	40백만 원	
② (차)	장기매출채권	40백만 원	(대)	매	출	36백만 원	
					현재가치할인차금	4백만 원	
③ (차)	현	금	14백만 원	(대)	매	출	14백만 원
④ (차)	현	금	14백만 원	(대)	매	출	12백만 원
				선	수	금	2백만 원

2. ③

①번은 인도기준(명목가액)으로 계상한 것이므로 법인세법 원칙대로 회계처리하였다.

또한, ②번은 현재가치할인차금 계상하였고 ④번은 회수기일도래기준으로 계상함으로써 법인세법상 특례로서 인정되고 있다.

회수기일도래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이란, 회수기일이 도래하여 실제 회수된 금액 또는 회수기일은 도래하였으나 아직 회수되지 않은 금액을 의미하므로 미회수분도 포함한다. 다만, 회수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선회수분은 제외한다.

따라서 ③번은 선회수분을 수익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세무조정이 필요하게 된다.

구 분	귀속시기
할 부 판 매	1. 원 칙 : 장·단기 불문하고 인도기준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부동산의 경우 그 대금을 청산일·이전등기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2. 특 례 - 장기할부조건 판매의 경우에만 특례 적용 ① 현재가치할인차금 인정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 현재가치 평가로써 익금에 산입한다. ② 회수기일도래기준 인정 ㉠ 일반법인 :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해당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회수기일도래기준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 중소기업 : 다만,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중소기업 법인은 계상여부에 관계없이 신고조정으로써 회수기일도래기준으로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③ 폐업일 장기할부 기간 중에 폐업한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문 3. 다음 자료에 의하여 영리내국법인 (주)B의 제5기(2015년 1월 1일 ~ 12월 31일)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액을 계산하면?

- | |
|---|
| <p>○ 제5기 회계장부상 대손충당금 당기상계액 : 20,000,000원(전액 「법인세법」상 대손금의 손금산입 요건을 충족함)</p> <p>○ 제5기 회계장부상 대손충당금 당기설정액 : 30,000,000원</p> <p>○ 제5기 회계장부상 대손충당금 기말잔액 : 50,000,000원</p> <p>○ 제4기말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잔액 : 10억 원</p> <p>○ 제5기말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잔액 : 12억 원</p> |
|---|

- ① 6,000,000원
- ② 24,000,000원
- ③ 26,000,000원
- ④ 28,000,000원

3. ③

$$\text{대손실적률} = \frac{\text{해당 사업연도의 대손금}}{\text{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채권가액}} = \frac{20,000,000}{10\text{억 원}} = 2\%$$

$$\text{대손충당금 한도액} = \text{설정대상채권잔액} \times \text{Max} [1\%, \text{대손실적률}] = 12\text{억 원} \times 2\% = 24,000,000$$

$$\text{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 50,000,000 - 24,000,000 = 26,000,000$$

문 4. 「소득세법」상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원천징수의 면제 또는 배제 등 원천징수의 특례는 고려하지 아니함)

- | |
|--|
| <p>ㄱ. 이자소득</p> <p>ㄴ. 배당소득</p> <p>ㄷ. 뇌물</p> <p>ㄹ. 연금소득</p> <p>ㅁ.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p> |
|--|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ㄹ
- ③ ㄴ, ㄹ, ㅁ
- ④ ㄷ, ㄹ, ㅁ

4. ②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고,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은 원천징수 배제대상 (기타)소득이다. 이 외에도 원천징수 배제대상 기타소득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이 있다.

문 5. 「법인세법」상 법인 및 과세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외국의 정부는 비영리외국법인에 해당한다.
- ② 「법인세법」상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수익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 ③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내에 주사무소를 둔 법인은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
- ④ 비영리내국법인이 신주인수권의 양도로 생기는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한다.

5. ②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문 6. 내국법인 (주)C는 제9기에 건물의 일부(취득 당시의 장부가액 3,000,000원)를 양도하였는데, 양도직전 건물 전체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제9기에 양도한 건물에 대한 세무조정으로 옳은 것은?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물 전체의 취득 당시의 장부가액 : 15,000,000원○ 건물 전체의 감가상각누계액 : 7,000,000원○ 건물 전체의 상각부인액 : 2,500,000원 |
|--|

- ① 익금산입 500,000원(유보)
- ② 손금산입 500,000원(△유보)
- ③ 익금산입 2,500,000원(유보)
- ④ 손금산입 2,500,000원(△유보)

6. ②

<손금산입> 500,000 (유보)

* 추인액 $2,500,000 \times (3,000,000/15,000,000) = 500,000$

감가상각자산을 양도한 경우 해당 자산의 상각부인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감가상각자산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 해당 양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부인액 또는 시인부족액은 해당 감가상각자산 전체의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부인액 또는 시인부족액에 양도부분의 가액이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전체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은 취득당시의 장부가액에 의한다.

문 7. 내국법인 (주)D는 제20기(2015년 1월 1일 ~ 12월 31일) 귀속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관할 세무서는 2016년 4월 29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다(발송일: 2016년 5월 2일, 도달일: 2016년 5월 4일, 고지서상 납부기한: 2016년 5월 31일). (주)D의 제20기 귀속분 법인세 납세의무의 소멸에 대한 견해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갑: 법정 신고기한의 다음 날 즉, 2016년 4월 1일이 법인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이다.
 - 을: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지 않았다면 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의 부과처분은 당연히 무효가 되므로, 납세고지를 2026년 3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 병: 납세고지서 발송일의 다음 날(2016년 5월 3일)이 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이다.
 - 정: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 법인세의 가산금, 체납처분비 및 이자상당세액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 ① 갑, 을
- ② 갑, 정
- ③ 을, 병
- ④ 병, 정

7. ②

갑과 정은 옳은 문장이다.

을 : 법인세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7년 이다. 따라서 납세고지를 2023년 3월31일까지 하여야 한다.

병 : 신고납부세목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로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2016년 6월1일)이 국세징수권소멸시효의 기산일이다.

문 8.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 (주)E의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의 거래내역이다.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 총액은? (단, 거래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수취한 것으로 가정함)

○ 4월 18일 : 배기량이 3,000 cc인 승용자동차의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 100만 원
○ 4월 22일 :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매입한 원료 매입세액 100만 원.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됨
○ 5월 12일 : 「법인세법」 제25조에 따른 접대비의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 100만 원
○ 6월 10일 : 공장부지의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 100만 원
○ 6월 20일 :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매입하였으나 과세기간 말 현재 사용하지 않은 재료의 매입세액 100만 원

- ① 100만 원
- ② 200만 원
- ③ 300만 원
- ④ 400만 원

8. ②

매입세액공제	매입세액불공제
4월 22일 :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00만원	4월18일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 5월12일 : 접대비관련매입세액
6월20일 : , 매입세액공제는 해당 재화나 용역의 구입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과세기간에는 아직 사업에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매입세액공제대상에 해당(공제가능) 100만원	6월10일 :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문 9.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은 무인자동판매기가 설치된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 ②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당시의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본다.
- ④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치장으로 신고된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9. ①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은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문 10.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할 때 가산(또는 산입)하지 않는 것은? (단, 피상속인과 상속인 모두 거주자이며, 증여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과세, 과세가액불산입 및 합산배제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 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8년 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②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4년 전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③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6개월 전에 토지를 처분하고 받은 금액 3억 원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
- ④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1년 6개월 전에 부담한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 4억 원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

10. ④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구 분	추정상속재산
㉠ 재산 처분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다음 중 어느 하나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 원 이상인 경우 ㉢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 원 이상인 경우
㉣ 채무 부담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다음 중 어느 하나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인 경우 ㉢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인 경우

문 11. 국세징수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② 납세고지서는 납부기한이 일정한 경우에는 납기가 시작되기 5일 전에 발급하여야 한다.
- ③ 세무서장은 세법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국세의 납부기한을 납세의 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내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 고지에 관한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을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국세를 징수하기에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11. ④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하고자 할 때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을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국세징수상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납세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므로 납세자의 재산권보호를 위해)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문 12. 영리내국법인 (주)F는 제7기 사업연도(2015년 1월 1일 ~ 12월 31일) 중 특수관계인인 개인 갑으로부터 상장법인 (주)G주식 1,000주(시가 1,000만 원)를 500만 원에 매입하였다. 이에 대한 「법인세법」상 처리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F가 매입한 (주)G주식 1,000주의 취득가액은 500만 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② (주)F는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인 500만 원을 익금 산입(유보)한다.
- ③ (주)F는 갑에게 500만 원을 배당한 것으로 소득처분한다.
- ④ 만약 (주)G주식이 아니라 건물을 500만 원에 매입하였다면 (주)F는 세무조정을 할 필요가 없다.

12. ③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저가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해당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법인인 (주)서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 乙로부터 상장법인인 (주)제주의 주식 500주(시가 500만원)를 300만원에 매입한 경우 <익금산입> 유가증권 200만원 (유보)로 세무조정한다. 위 이외(以外)의 저가매입은 세무조정 없이 매입가액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문 13.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확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상속인이 체결한 보험계약의 수익자로서 단독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수령하고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를 그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 ②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부가가치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③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법인에는 비상장법인뿐만 아니라 상장법인도 포함된다.
- ④ 사업양수인은 양도일 이후 성립된 사업양도인의 국세에 대해 납부의무가 있다.

13. ④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즉,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 등”에 대해서만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

문 14.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장기출장을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 ③ 납세자의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원칙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부과·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이를 제공할 수 있다.
- ④ 납세자 본인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납세자가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14. ②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수시선정조사사유)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推定)하여야 한다.

- ①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②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 ③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 ④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 ⑤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문 15.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면세사업만을 경영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의무가 없다.
- 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ㄷ. 면세의 포기를 신고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부터 3년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지 못한다.
- ㄹ.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 식료품에는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가공식료품이 포함된다.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ㄹ
- ③ ㄱ, ㄷ, ㄹ
- ④ ㄴ, ㄷ, ㄹ

15. ③

(일반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공익법인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즉, 일반 사업자가 국가 등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현물기부)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나,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문 16.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적용될 수 있는 것은? (단, 주택은 「소득세법」상 미등기양도제외자산 및 고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 ① 1세대 1주택(양도일 현재 5년 보유)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 ② 양도소득기본공제
- ③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 ④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지 않는 경우 주택 취득당시 법령이 정하는 가격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

16. ④

양도소득세 계산시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한 불이익

- ① 토지·건물에 대한 필요경비개산공제율이 3%가 아닌 0.3%가 적용된다. (다만, 실제필요경비계산에 있어서는 불이익 없다.)
- ②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 ③ 양도소득기본공제가 배제된다.
- ④ 70%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 ⑤ 비과세, 감면이 배제된다.

문 17.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②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④ 세법에서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7. ②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문 18.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의 과세표준으로 보는 공급가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자기가 공급한 재화에 대해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그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한다.
- ②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한다.
- ③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 ④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특수관계인에게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18. ①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은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에 반하여,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또한,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時價)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문 19. 「소득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居所(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 ②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 ③ 내국법인이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 ④ 외국법인이란 외국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단체(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는 경우 포함)로서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19. ④

“외국법인”이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단체(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외국 법인은 법인세법에 열거된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납세의무를 지므로 제한납세의무자라 한다.

- 1. 설립지국의 법률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
- 2.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
- 3. 구성원과 독립하여 자산을 소유하거나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등 직접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단체
- 4. 그 밖에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국내의 단체가 「상법」 등 국내의 법률에 따른 법인에 해당되는 단체

문 20.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의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세무공무원이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하더라도 폐쇄된 문이나 금고를 직접 열 수 없다.
- ② 세무공무원은 제3자의 가옥에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3자의 가옥을 수색할 수 있다.
- ③ 주로 야간에 주류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해가 진 후에도 영업 중에는 수색을 시작할 수 있다.
- ④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을 하기 위하여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20. ①

세무공무원은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체납자의 가옥·선박·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거나 폐쇄된 문·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또는 직접 열 수 있다.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제3자가 재산의 인도(引渡)를 거부할 때에도 또한 같다.